|  |  |
| --- | --- |
| **한화 시큐리티플러스 안심서비스 신청서** |  |

|  |  |
| --- | --- |
| **가입신청고객정보** | **‘\*’**사항은 반드시 기재하셔야 할필수항목입니다. |
| **계약고객** | **\*상호명**(법인명) |  | **\*고객생년월일** |  |
| **\*피보험자명** |  | **\*연락처** |  |
| **사업장정보** | **\*사업장주소** |  |
| **\*업종** |  | **\*사업자등록번호** |  |
| **서비스이용자** | **종업원1**(성명/생년월일) |  | **종업원2**(성명/생년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안심서비스 가입 내용** |  |  |  |  |  |
| **구 분** | **□ 영업소형** | **□ 주택형** | **비고** |
| **보장내용** | **침입강도상해** | **사망/후유 장해** | **50,000,000** | **50,000,000** | 이용자 및 고지 종업원 담보 |
| **도난손해** | **현금/유가증권** | **1,000,000** | **1,000,000** | 자기 부담금 없음 |
| **동산/귀금속류** | **3,000,000** | **5,000,000** | 자기 부담금 없음 |
| **시설 파손** | **1,500,000** | **2,500,000** | 침입,도난 행위로 인한 파손담보 |
| **화재손해** | **주택** | **미포함** | **10,000,000** | 주 택 : 실손보상 |  | **화재복구지원금** |

|  |
| --- |
| **안심도난 조건 안내** |
| **가입 불가 물건** | - 야적장(야적물), 천막구조물, 동물∙식물, 오토바이, 자동차(전시품가능) 수탁물(세탁소,전당소 등), 개인소지품(지갑,손목시계,반지 등) |
| **침입강도 사망/후유** | - 영업소: 가입자 본인 담보 및 서면 고지된 종업원(만15세 미만 제외)에 한해 담보[현행법상. 만 15세 미만,심신상실자,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담보 할 수 없음.] |
| **보관시설 파손** |  - 도난행위에 의해 파손된 시설(건물, 금고, 시건장치 등)보상. [단순 유리파손은 보상제외] |
| **기타 조건** | - 미시건 상태로 부재중 사고와 강압과 완력에 의하지 않는 좀도둑 사고는 보상제외.- 사고 발생시 경찰서신고(도난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및 사고현장 사진 필수 제출- 사고 발생 현장에 영상장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설치일 24시 이후부터 보상 가능. |

 |
|

|  |  |
| --- | --- |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위탁 동의** |  |

당사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아래의 개인정보 항목을 아래의 제공받는 자에게 제공(공유포함) 및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

|  |  |  |  |
| --- | --- | --- | --- |
| **제공받는자** |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 한화손해보험㈜ | 시큐리티보험가입,만기관리, 보험금지급, 사고조사 등 | 성명,생년월일,연락처,주소,사업자등록번호 등 | 보험서비스 이용시 까지 |

본인은 상기 안심서비스 제공을 위해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가입에 동의하며, 상법731조에 따라 영상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의 침입강도 사망 및 재물을 담보하는 보험계약 체결에 동의 합니다. 또한, 시큐리티플러스 영상서비스 이용 중단 시 해당 보상계약이 별도의 통지 없이 해지 됨에 동의하고, 해지 이후에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상기의 시큐리티플러스 안심서비스 가입관련 이용안내 및 보상조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뒷면의 이용약관에 따라 시큐리티플러스 안심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  |  |  |  |
| --- | --- | --- | --- |
| **\*신청일** |  **년 월 일** | **\*신청자** |  **(인/서명)** |

 |
| **한화 시큐리티플러스 안심서비스 약관안내** |  |

|  |  |
| --- | --- |
| **침입강도손해(사망 및 후유장해 담보)** |  |

 **[보상하는 손해]**

①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강도에 의해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상해에는 강도의 강제력에 의해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③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말합니다. \*형법 제337조∼제339조

④강도에 의한 상해사고의 입증여부는 경찰신고서류, 경찰 또는 검찰 조사기록 등 관련 자료에 따릅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 또는 보험수익자가 저지르거나 가담한 강도 손해

②전쟁, 폭동, 소요, 노동쟁의 또는 이와 유사한 사변 중에 생긴 강도손해

③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변재가 일어났을 때에 생긴 강도손해

④형법 제340조의 해상강도손해

⑤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치 및 이와 유사한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강도손해

⑥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고의

⑦핵연료 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⑧제7호.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가 만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인 경우 보험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

|  |  |
| --- | --- |
| **도난손해(동산 및 현금,유가증권 담보)** |  |

 **[보상하는 손해]**

①보험기간 중에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하「보험의 목적」이라 합니다)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관장소 내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에 불법침입자, 절도 또는 강도의 도난행위로 입은 직접손해(훼손, 망가짐 또는 파손을 포함)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가재 일체와 집기비품을 포함한 모든 동산

2. 귀금속, 보옥, 보석 및 고지된 귀중품

3. 글, 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4. 현금 및 유가증권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도난손해

②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피고용인, 동거인, 숙박인, 감수인 또는 당직자가 일으킨 행위 또는 이들이 가담하거나 묵인 하에 생긴 도난손해

③지진, 분화, 풍수해,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손해

④화재, 폭발이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손해

⑤절도, 강도행위로 발생한 화재 및 폭발손해

⑥상점, 영업소, 창고 또는 작업장 내에서 일어난 좀도둑으로 인한 손해

⑦재고(시재) 조사시 발견된 손해

⑧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⑨자동차, 오토바이, 동물, 식물에 발생한 손해 및 수탁물 손해

⑩보험의 목적이 보관장소를 벗어나 보관되는 동안에 생긴 도난손해

⑪보험목적의 수용장소를 계속하여 72시간 이상 비워둔 동안에 생긴 도난손해

 (단, 도난경비시스템 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⑫도난손해가 생긴 후 30일 이내에 발견하지 못한 손해

⑬상점, 영업소, 창고 또는 작업장 안에 있는 상품, 원료 또는 영업소용 집기 등을 보험목적으로 한 때에 고객이나 그 밖의 사람에 의한

발품이나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이 생긴 분실 또는 망실의 손해

⑭출입문(창문을 포함합니다)의 잠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도난손해 또는 외부로부터 침입 흔적이 없는 손해

|  |  |
| --- | --- |
| **보관시설파손 담보** |  |

**[보상하는 시설파손 손해]**

**-** 계약기간 중에 불법침입자, 절도 또는 강도가 보험의 목적을 훔치기 위하여 보험의 목적을 보관하고 있는 보관시설(건물, 금고 및 도난방지시설을 포함합니다)을 파손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도난손해조항에서 정한 보험가입 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도난행위에 기인하여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는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 합니다.

**※ 가입불가 및 보상제외**

-야적장(야적물), 천막구조물